

2026. 7.

## 중국 도서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동향과 주요 변화

국회입법조사처  
백지연

### 1. 개정 배경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2026년 5월 「저작권이용허락계약 표준계약서(도서출판)」(版权许可合同示范文本(图书出版), 이하 '표준계약서')을 발표하였다. 이는 1992년에 제정되어 1999년에 한 차례 개정된 「도서출판계약(표준양식)」(图书出版合同(标准样式), 이하 '표준양식')을 약 27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sup>1)</sup>

기존 표준양식은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 출판 환경을 전제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출판사의 출판권 확보와 저작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출판시장에서는 전자책,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저작물의 창작·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1999년 표준양식과 최근 발표된 2026년 표준계약서를 조항별로 대조하여, 주요 변화를 정리하였다.

### 2. 주요 내용상의 변화

#### 1) 계약 성격의 변화

1999년 표준양식은 제1조에서 출판사가 일정 지역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도서 형태로 출판·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받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전반 역시 출판 시기(제7조), 인쇄부수(제7조), 재판·중판(제14조·제15조) 등 전통적인 출판사업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2026년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계를 저작권 이용허락(著作权许可)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이용허락의 유형(독점이용허락(专有许可) 또는 비독점이용허락(非专有许可)), 이용 가능한 언어(文字), 지역(地域), 판본(版本), 제본형태(装帧), 저작자 표시방식(署名方式)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범위를 더욱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이는 출판산업계에서 출판사가 단순히 책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저작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의 이용 형태가 과거 종이책 중심에서

1)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라는 용어로 번역하였으나, 중문 명칭 자체도 '표준양식(标准样式)'에서 '시범문본(示范文本)'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표준서식이라는 성격에서 모범 사례라는 성격으로 위상이 조정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전자출판,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유통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 2) 재이용허락 관련 규정 세분화

제3자 이용과 관련된 규정 역시 크게 정비되었다. 1999년 표준양식은 제8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용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이용허락(再許可)의 범위와 조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2026년 표준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 여부와 범위를 각 권리별로 계약 단계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제17조), 출판사가 제3자에게 저작물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이용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6항).

## 3)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정의 신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관련 조항의 신설이다.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을 창작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과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서 이용하는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저작자가 작품이 원창작물임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창작한 경우 이를 출판사에 설명하도록 하고, 작품에 AI 생성·합성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적 표시(显式标识)를 부가하고 이를 출판사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4항). 특히 '보조적 이용'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대한 설명 의무를, '생성·합성 콘텐츠 포함'에 해당할 때에는 설명의무에 더해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AI 개입의 정도에 따라 의무를 차등화하였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권리의 적법성 보증 조항(제3조)내 편성하여, AI 개입 사실의 미고지(不告知)를 적법성 보증 위반의 문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판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저작물을 인공지능 대규모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도록 하였다(제16조제4항). 이는 학습데이터로서의 이용을 출판·번역·전송 등 기존 권리 유형과 구별되는 별개의 이용 행위로 보아, 그 권한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별도의 이용허락 대상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 내 명문화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별도 약정'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대가 산정이나 이용허락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

## 4) 저작권 보증 및 책임 규정의 강화

표준양식은 저작권 침해(제3조), 명예권·초상권 침해(제4조)에 관한 책임을 저작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역시 이와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권리보증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제3조). 특히 계약

체결 시 저작권자가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저작물이 기존 작품의 개작·번역·주석·정리·편집을 통하여 작성된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 받았다는 사실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제18조에서는 위약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위반에 대해 저작권자의 책임과 출판사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 3. 의의 및 시사점

27년 만의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중국 출판 산업의 계약 실무가 출판권 중심에서 저작권 이용허락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계약 성격의 변화는 출판산업계에서 출판사가 단순히 책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저작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의 이용 형태가 과거 종이책 중심에서 현재 전자출판,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유통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AI 관련 규정의 신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과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 등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표준계약서 내용의 변화로 규제 정책이 계약 실무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정의 도입으로 출판사는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창작환경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출판계약 실무에서 저작권자의 의무와 출판사의 의무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5/t20260528\\_991777.html](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5/t20260528_991777.html)
- <https://www.chinawriter.com.cn/GB/n1/2016/0707/c403971-28534605.html>